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70 발의연월일: 2025. 5. 21.

발 의 자:고동진·김위상·서명옥

조지연 • 박정훈 • 이달희

김상훈 · 송석준 · 주호영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 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 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 ①
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	
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	
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	<u>이 경우 「도시</u>
<u>설></u>	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
	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
	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